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3 발의연월일: 2024. 6. 14.

발 의 자: 송석준 · 김성원 · 안철수

유상범 • 성일종 • 김선교

박충권 • 박대출 • 박덕흠

엄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현재 농지 관련 각종 규제로 영농과 농지이용활성화가 크게 제약되는 등 농민들의 생활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특히, 농업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를 위한 숙소로 농지전용 또는 일시사용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사용이 막혀있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민들이 바쁜 농사철에 수시로 구매하여야 하는 농약 등을 판매할수 있는 시설의 설치도 허용하지 않아 농민들의 영농활동에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주말·체험 영농이나 치유농업을 하려고 해도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 소유를 막고 있어 농지의 원활한 이용을 저해하고,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 농민들까지 농지를 매도할 수 없게 되어 2022년 대비 2023년 농지거래량이 24%나 감소하는 등 농지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농을 위한 근로자들의 숙소 및 농약판매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영농활성화를 돕고,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체험농장이나 치유농업을 위해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치유농업을 위한임대차를 허용하여 농지거래활성화와 농민들의 생활안정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체험 영농이나 치유농업을 위한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한 사람과 농업법인이 주말·체험영농뿐만 아니라 치유농업을 위한 임대차도 허용함(안 제6조제2항제3호·제3호의2 및 제23조제1항제5호및제5호의2).
- 나. 농수산업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거주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농업진흥지역포함)에 냉난방장치, 급수장치 등 거주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시설을 설치하고, 전용과 일시사용을 허용함(안 제32조제1항제10호, 제35조제1항제4호, 제36조제1항제6호).
- 다. 농업진흥지역에서 영농을 위해 농약 등의 판매업을 하는 데 필요 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함(안 제32조제1항제11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을 "농지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치유농업(「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치유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조제2항제2호"를 "제6조제2 항제2호·제3호의2"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제4호의3 및 제4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6조제2항제3호의2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치유농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23조제1항제5호 중 "체험영농을"을 각각 "체험영농·치유농업을"로하고, 같은 항 제5호의2 중 "체험영농을"을 "체험영농 또는 치유농업을"로 한다.

제32조제1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농수산업 고용인력의 거주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난방장치, 급수장치 등 거주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시설의 설치.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11. 농약 등의 판매업(「농약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판매업을 말한다)을 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

제3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수산업 고용인력의 거주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난방장치, 급수장치 등 거주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시설의 설치

법률 제19877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수산업 고용인력의 거주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난방장치, 급수장치 등 거주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에 설치한 거주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 지에 농수산업 고용인력의 거주를 위하여 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2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제1항 중 "가공 등"을 "가공 및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치유농업 등"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생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			
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			
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u>제</u>	3 <u>-</u> <u> </u>		
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	지를		
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u><신 설></u>	3의2. 치유농업(「치유농업 연		
	<u>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u>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치유		
	<u> 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u>		
	영위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u>경우</u>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	②		
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 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 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를 관할하는 시 · 구 · 읍 · 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 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ㆍ제 7호・제9호・제9호의2 또는 제 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 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또 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 성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 하지 아니하여도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 1. ~ 4. (생략)
- ③ ~ ⑦ (생 략)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 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 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 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 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 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

<u>제6조제2항제2호 • 제</u>
<u> 3호의2·</u>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세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
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이 아닌 자, 그 밖에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4의2. · 4의3. (생략)

5. ~ 7. (생 략)

② (생략)

-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 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 게 할 수 없다.
 - 1. ~ 4. (생 략)
 - 5.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6조제2항제3호의2에 따
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
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
유 없이 그 농지를 치유농업
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u>4의3.</u> ・ <u>4의4.</u> (현행 제4호의2
및 제4호의3과 같음)
5.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
대차) ①
<u>.</u>
1. ~ 4. (현행과 같음)
5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 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 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 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 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 우

5의2.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업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 게 하는 경우

6. ~ 9. (생략)

② (생략)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9. (생 략) <신 설>

 험영농·치유농업을	
헌영농·치유농업을	
 5의2	
<u>체험영농 또는 치유농</u> 을	· <u>업</u>
	
6.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
한) ①	
·	
 1. ~ 9.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끝름) 10. 농수산업 고용인력의 거	주

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신 설>

② ~ ④ (생 략)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 농지를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 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3. (생 략) <신 설>

②·③ (생 략)

하는 바에 따라 냉난방장치, 급수장치 등 거주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시설의 설치.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한 다.

- 11. 농약 등의 판매업(「농약관 리법 | 제2조제7호에 따른 판매업을 말한다)을 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
- ② ~ ④ (현행과 같음)

- 1. ~ 3. (현행과 같음)
- 4. 농수산업 고용인력의 거주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난방장 치, 급수장치 등 거주에 필요 한 설비를 갖춘 시설의 설치
- ②·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877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저 허가 등)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 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 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 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다.

1. ~ 5. (생략) <신 설>

② ~ ⑤ (생 략)

법률	제19	877호	농	지법
	일부	-개정팀	법률	
]36조(농지	기의	타용.	도	일시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①		
1. ~ 5. (현행	과 같음)	

- 6. 농수산업 고용인력의 거주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난방장 치, 급수장치 등 거주에 필요 한 설비를 갖춘 시설을 설치 하는 경우
- ② ~ ⑤ (현행과 같음)